

제 125/2020/ND-CP 호 시행령 및 제4848/TCT- PC호 OL에 관한 뉴스

세무 및 계산서 관련 행정 위반
제재 규정

2020년 12월



배경

- ❖ 2020년 10월 19일 정부는 세무 및 계산서 행정위반 제재에 관한 제125/2020/ND-CP호 시행령을 공포하였으며, 2020년 12월 5일부터 유효합니다.
- ❖ 2020년 11월 12일 세무총국은 세무 및 계산서 행정위반 제재에 관한 제125호 시행령 실행을 위한 제4848/TCT-PC호 OL을 공포하였습니다. ("제4848호 OL")

본 뉴스에서 딜로이트 베트남은 제125호 시행령 및 제4848호 OL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을 요약드리고자 합니다

제125호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제125호 시행령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 규정 준수 및 세법 자체 준수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
- 행정 위반 제재 처리 절차의 지속적인 개선
- 전자계산서의 광범위한 사용 이후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계산서 관련 행정 위반 행위 처리 절차 지침
- 세무 및 계산서 관련 현행 행정 위반 행위 처리 규정 보완

본 시행령 발효일부터 다음 규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2013년 10월 16일 발행된 제129/2013/ND-CP호 시행령 제1장 (세무 행정 위반 제재) 및 제 3장 (효력); 및
- 재무부의 세무 행정위반 제재에 관한 2013년 11월 15일 제166/2013/TT-BTC호 시행규칙, 2014년 1월 17일 제10/2014/TT-BTC호 시행 규칙 및 2016년 10월 31일 제176/2016/TT-BTC호 시행 규칙

제 125/2020/ND-CP 호 시행령 및 제4848/TCT- PC호 OL에 관한 뉴스

세무 및 계산서 관련 행정 위반
제재 규정

2020년 12월



제125호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적용 범위

본 시행령은 행정 위반, 제재 조치, 제재 기준, 구제 조치, 벌과금 부과 권한, 행정 위반 기록 권한, 세무 및 계산서에 대한 행정 위반에 관한 여러 제재 절차를 규정한다.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행정 위반;
- 세관에서 징수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무 행정 위반;
- 세무 신고 절차에 대한 규정 위반, 사업 일시 중단 통지 규정 위반 및 사업자 등록 기관에 사업 중단 기간 보다 앞선 사업 재개 통지 규정 위반;

주요 정의

- 세무 행정 위반은** 조세 행정법령, 조세 관리법령 및 기타 수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범죄 행위가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의 행위로써 법률에 의해 행정 위반에 관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 계산서에 관한 행정 위반은** 계산서에 관한 법령 조항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의 행위로써 법률에 의해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 “복잡한 상황이 많은 사건”, “특별히 중대한 사건”, “위반 행위 발견 일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

제재 대상

- 납세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세 법령에 따라 세무 신고, 등록 및 납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당사자에 관한 규정 보완(예: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위임을 받은 당사자가 제125호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임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제재 대상이 된다. (제3조, 1항)
- 종속단위 및 사업장을 포함하여 직접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단체에 관한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한다.



제 125/2020/ND-CP 호 시행령 및 제4848/TCT- PC호 OL에 관한 뉴스

세무 및 계산서 관련 행정 위반
제재 규정

2020년 12월



제125호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가중 또는 경감

-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대규모 세무 행정 위반 기준-세액 1 억 VND 이상 또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기준 5 억 VND 이상-을 명시하였다.(제6조, 2항)
-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계산서 관련 대규모 행정 위반 기준-10개 이상의 계산서-을 명시하였다(제6조, 2항).

세금 징수 기한

- 위반사항 적발일로 부터 최대 10년을 소급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단체 및 개인에게만 적용됨을 추가하였다.
- 유관기관이 의무를 정한 토지 수익 및 기타 소득의 징수 기한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 :

- 세무 당국의 웹 포털에 공표된 IT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납세자가 세무 및 전자 계산서 절차를 제때 수행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관한 상세 규정을 보완하였다 (제9조, 1항).
- 세무 행정 위반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경우(제9조)를 추가하였다
 - 관련 세무 당국 및 유관기관의 공식 지침서 또는 결정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행정 위반 행위
 - 개인소득세 확정신고를 개인이 직접 수행하고 확정신고 서류 제출 기한을 경과하였으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 조세 관리 법령 제51조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개인 또는 가족 사업의 경우.
- 제11조, 6항에서 규정한 세무 등록 정보 변경 통보 기한 위반 중 제재를 받지 않는 사례를 보완하였다.





세무 행정 위반 제재규정 핵심 변경사항

특정한 세무절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범위 인상

- 세무 신고기한 위반 (제10,11조):** 납세 신고서, 납세 서류, 영업 중단 통지 제출 기한 경과 또는 영업 재개일 이전 영업 재개의 경우 위반 일수 경과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한다. 기준 규정보다 2~4배가 증가한 백만 동에서 천만동(10조) 또는 50만동에서~7백만동(11조)의 과태료가 부과됨;
-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지 않는 납세 신고서상 납세신고 오류 및 불완전 신고 위반 (제12조):** 기준 금액보다 2.5배 증가한 50만동에서 천 2백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됨;
- 납세신고서 지역제출 위반(제13조):** 기준보다 4배 증가한 2백만동에서 2천 5백만 동까지의 행정 과태료가 부과됨;
- 참고:** 납세신고서를 90일 이상 지역 제출하는 경우 조세회피로 간주된다. 다만, 세무당국이 세무 조사 및 감사 결정서 또는 지역 제출에 관한 통지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세금 및 지역납부이자율 납부한 경우 조세회피로 처벌받지는 않으나 천 5백만 동에서 2천 5백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정보 공개 규정 위반 (제14,15조):** 기준보다 약 1~2배가 증가한 2백만 동에서 천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됨;
- 세금 납부액 증가, 세금 면제 및 감면, 환급 세액 증가를 발생시키는 세무 신고 위반 (제16조):**
 - 세금 납부액 증가나 세금 면제 및 감면, 환급 세액 증가로 이어지는 납세신고에 대한 규정을 보완. "세금 계산 기준 또는 공제 세액을 잘 못 신고하거나, 면제, 감면, 환급 대상을 잘못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
 - 세금 납부액 증가로 이어지는 납세 신고 오류를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 수정.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세무 감사 및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에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수정한 경우 제16.1.a조에 따른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이전 가격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가격 문서를 준비하거나 이전가격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 보완.
- 조세회피 (제17조):** 조세회피의 경우 개인 및 단체에 같은 수위의 제재를 부과한다.

제 125/2020/ND-CP 호 시행령 및 제4848/TCT- PC호 OL에 관한 뉴스

세무 및 계산서 관련 행정 위반 제재 규정

2020년 12월



계산서 행정 위반 제재규정 핵심 변경사항

계산서에 대한 행정 위반, 제재 방식, 구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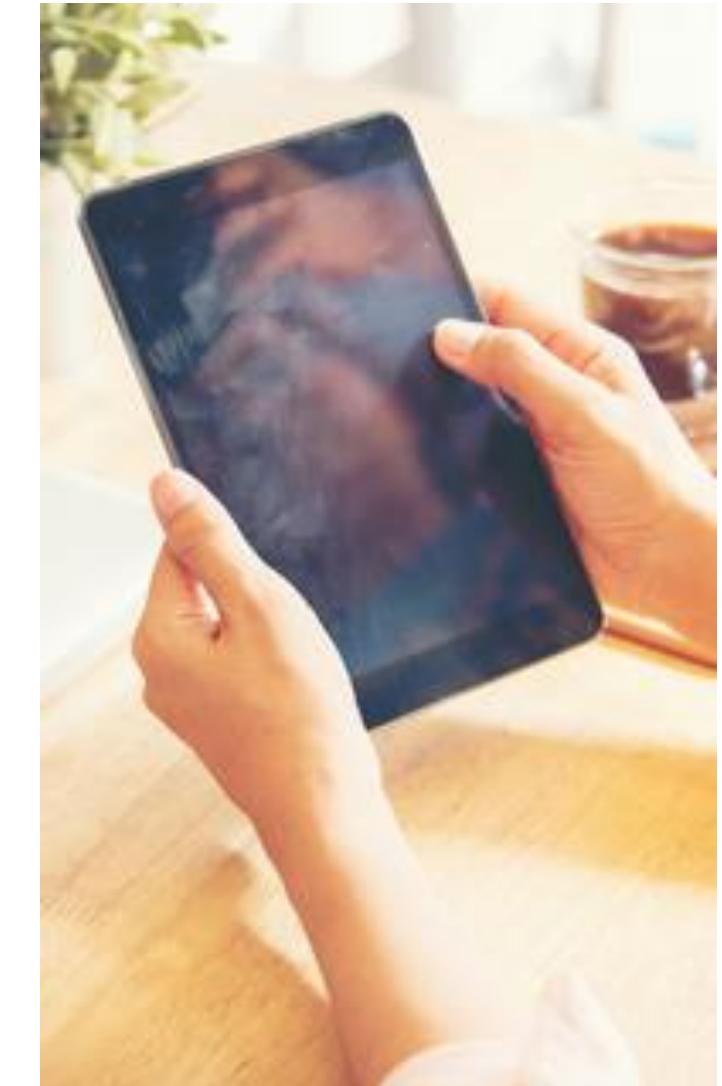
- 자체 계산서 인쇄 및 전자 계산서 작성에 관한 위반 행위 제재 규정 폐지;
- 계산서 발행 통지 이전 또는 세무당국에서 구입후 미사용한 계산서 분실, 화재 또는 손상 관련 과태료 인하: 5백만동에서 18백만동 사이에서 백만동에서 8백만동 사이로 조정(제25항 2,3조).

전자 계산서 관련 위반 행위 추가

- 계산서 파쇄 및 세무당국의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거나 데이터 전송이 불가한 금전 등록기를 통해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전자 계산서 데이터 마감일 이후 세무당국에 데이터 전송;
- 신고 기간 내 실제 사용량과 일치하지 않는 전자 계산서 데이터 시트 전송;
- 계산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자계산서 소프트웨어 제공;

구제 방식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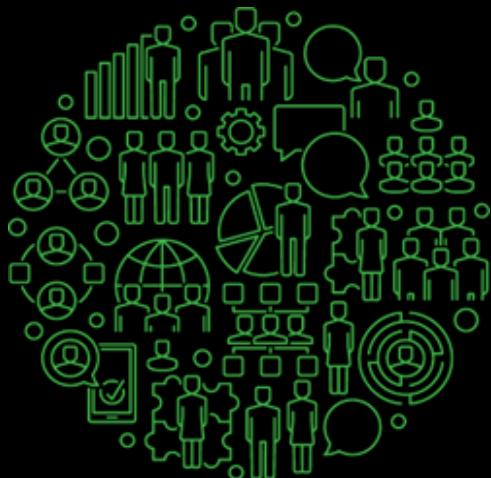
- 계산서 파기 강제 (제27조);
- 행정 위반행위로 얻은 부정 소득을 강제 반환 (제22조)



제 125/2020/ND-CP 호 시행령 및 제4848/TCT- PC호 OL에 관한 뉴스

세무 및 계산서 관련 행정 위반 제재 규정

2020년 12월



세무 및 계산서 제재에 관한 심사권한 및 절차

세무 및 계산서 제재에 관한 심사권 및 절차 규정 일부 보완

- 행정위반 기록 및 행정위반 전자기록 작성에 관한 규정 보완(전자 기록의 경우 위반한 단체 또는 개인의 서명이 요구되지 않음)
- 세무 조사/감사를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 또는 행정위반 전자기록 작성 및 기타 제125호 시행령 규정 위반사항 등에 대한 납세자의 설명 요구 권리 보완
- 세무 및 계산서 관련 행정사항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가 세무상 전자 거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전자 결정문 전송 규정 보완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